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(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)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(과태료)제3항 제18호, 동법 시행령 제20조(과태료의 부과) 및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30일

원주시 반곡관설동장

- 처분내용: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
- 공고기간: 2023.05.30. ~ 2023.06.14.(16일)
- 공시송달 대상

성 명	주 소	위반내용	과태료	비 고
한 **	원주시 판부신촌길 5*-*	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	25만원	폐문부재 (반송)

- 공고내용
 -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원주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(최초 3%, 매월 1.2%씩 최장 60개월 증가산)이 부과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문의처: 원주시 반곡관설동 세외수입담당자 (☎ 033-737-5910)